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

(2017. 12. 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유 준 상]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0일(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11월 20일(월)

4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5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,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6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2항 제2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규정 신설
 - 제1호 : 기금운용계획 ⇒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- 제2호 : 결산보고 ⇒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
-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종기일을 조례안에 명시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,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- 검토의견으로는
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맞도록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내용을 추가변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